

라미라다 시 공민권법 제 6 장에 의거한 대중 교통 서비스 항의 절차

라미라다 시는 모든 종류의 차별 대우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. 연방 제 6 장 규정에 따라 다음 특정 세 종류의 차별은 연방 제 6 장 규정 범주에 듭니다: 인종, 피부색 그리고 출생국에 따른 차별. 본 시는 연방 정부 재정 지원을 받으므로 시의 대중 교통(트랜짓) 서비스를 상대로 제기된 제 6 장에 의거한 항의를 조사 및 추적을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항의서 접수 절차를 일반 대중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항의서 접수

라미라다 시의 트랜짓 직원이나 트랜짓 계약 업체의 직원에 의해 인종, 피부색 또는 출생국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이 든 고객은 시를 상대로 항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. 항의는 차별이 주장된 사건 날짜로부터 반드시 180 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.

항의에 대한 조사

한번 접수되면 시 서기관 사무실의 직원이 그 항의를 조사하도록 지정됩니다.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 신고자 및 관련 당사자와의 대화도 항의 조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시는 완전한 항의만을 조사할 것입니다. 만약 시가 사건을 종결하는데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신고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. 신고자는 시가 요청한 자료를 조사관에게 평일 10 일 내에 제공해야 하고 아니면 정보 수집을 위한 시간을 더 요청해야 합니다. 만약 신고자가 평일 10 일 내에 요청에 답을 하지 않으면 시는 행정상 사건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. 만약 신고자가 더 이상 사건 진행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사건 종료 가능합니다.

시는 항의서 수령 후 평일 10 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할 것입니다.

사건의 결의

조사관이 항의를 검토한 후 신고자에게 사건 종결 편지 또는 결론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. 사건 종결 편지는 주장 내용을 요약하고 제 6 장 위반 사항이 없었으므로 사건은 종결된다는 내용의 편지입니다. 결론서는 주장 내용과 사건과 관련된 인터뷰를 요약하고 징계 조치, 직원 또는 계약 업체 직원의 추가 교육 또는 기타 조치가 취해 질 것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.

항소 절차

결론서는 신고자에게 결정에 대한 항소 권리를 통지하기도 합니다. 만약 신고자가 시나 대중 교통 제공자의 결론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신고자는 시의 회신을 받은 후 평일 10 일 이내에 시 관리자에게 서명으로 재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신고자는 재고 요청에 대한 상세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. 시 관리인은 신고자의 재고 요청을 수락할 지 거부할 지에 대해 평일 10 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지할 것입니다. 만약 시 관리인이 사안의 재고를 수락한다면 항의는 상기 기술된 "항의 조사" 절차에 따른 재검토를 위해 조사관에게 송부될 것입니다.

교통부에 항의서 접수

항의서는 언제든지 조사를 위해 직접 교통부에 접수 될 수 있습니다:

U.S. Department of Transportation
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
Office of Civil Rights, Region IX
201 Mission St., Suite 1650
San Francisco, California 94105-1839

FTA 의 유포서 4702.1B 의 항의 규정 제 9 장에 따라 이러한 항의는 차별이 주장된 사고일 180 일 이내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.

2016 년 6 월 개정본